

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 안내

(BK21사업팀, '23.6.16.)

1 추진 배경

□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프로그램 관련

-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대학 현장 혼란 발생

2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(안)

□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프로그램 참여 지원 기준 명확화

- 관련 규정: 지침 **【별표 5】**,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9조
- 개정 사유: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대학 현장 혼란 해소 필요
- 개정 방향: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여 기준 명확화

<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 전·후 주요 비교표 >

구 분	현행			개정(안)		
	구분	집행 기준	비고	구분	집행 기준	비고
지침 【별표 5】 (대학원 혁신지원비 예산편성 비중 및 집행기준)	3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BK21 사업 교육 연구단(팀)의 교육 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 과정생 지원금 	- 4학년 1학기생에 한해 지원 가능	3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BK21 사업 교육 연구단(팀)의 교육 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 과정생 지원금 	- 학사편성 최종 학기생에 한해 지원 가능

구 분	현행	개정(안)
<p>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9조 (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)</p>	<p>⑦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에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장학금은 지침 제48조 제5항에 편성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편성액의 30% 이하로 집행 가능하다. 이 때, 지원 대상은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 4학년 1학기생으로 한정한다.</p>	<p>⑦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에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장학금은 지침 제48조 제5항에 편성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편성액의 30% 이하로 집행 가능하다. 이 때, 지원 대상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 중 학사과정 최종학기생으로 한정한다.</p>
	<p><신설></p>	<p>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은 교육연구단(팀)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학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. 대학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.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휴직을 한 사람 4.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
	<p><신설></p>	<p>⑨ 제8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단(팀)의 장이 해당 대학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, 예외사항 적용기간,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.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생을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.</p>

※ 개정사항 전문은 [붙임] 참조

붙임

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(안) 신·구 조문 대비표

구 분	현행	개정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침	<p>【별표 5】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대학원 혁신지원비 예산편성 비중 및 집행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집행 기준</th> <th>비고</th> <th>편성 비중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인건비</td> <td><현행과 같음></td> <td><현행과 같음></td> <td>①</td> </tr> <tr> <td>2. 국제화 경비</td> <td><현행과 같음></td> <td><현행과 같음></td> <td rowspan="2">②</td> </tr> <tr> <td>3.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의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 하는 학석사 연계 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금 </td> <td>- 4학년 1학기생에 한해 지원 가능</td> </tr> <tr> <td>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</td> <td rowspan="3"><현행과 같음></td> <td rowspan="3"><현행과 같음></td> <td>①</td> </tr> <tr> <td>5.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</td> <td rowspan="2">5% 이내</td> </tr> <tr> <td>6. 기타 사업 운영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집행 기준	비고	편성 비중	1. 인건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①	2. 국제화 경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②	3.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의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 하는 학석사 연계 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금 	- 4학년 1학기생에 한해 지원 가능	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①	5.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	5% 이내	6. 기타 사업 운영비	<p>【별표 5】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대학원 혁신지원비 예산편성 비중 및 집행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집행 기준</th> <th>비고</th> <th>편성 비중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인건비</td> <td><현행과 같음></td> <td><현행과 같음></td> <td>①</td> </tr> <tr> <td>2. 국제화 경비</td> <td><현행과 같음></td> <td><현행과 같음></td> <td rowspan="2">②</td> </tr> <tr> <td>3.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의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 하는 학석사 연계 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금 </td> <td>- 학사 과정 최종 학기생에 한해 지원 가능</td> </tr> <tr> <td>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</td> <td rowspan="3"><현행과 같음></td> <td rowspan="3"><현행과 같음></td> <td>①</td> </tr> <tr> <td>5.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</td> <td rowspan="2">5% 이내</td> </tr> <tr> <td>6. 기타 사업 운영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집행 기준	비고	편성 비중	1. 인건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①	2. 국제화 경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②	3.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의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 하는 학석사 연계 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금 	- 학사 과정 최종 학기생에 한해 지원 가능	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①	5.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	5% 이내	6. 기타 사업 운영비
	구분	집행 기준	비고	편성 비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. 인건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. 국제화 경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.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의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 하는 학석사 연계 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금 	- 4학년 1학기생에 한해 지원 가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.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			5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. 기타 사업 운영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집행 기준	비고	편성 비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인건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국제화 경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의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 하는 학석사 연계 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금 	- 학사 과정 최종 학기생에 한해 지원 가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			5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. 기타 사업 운영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산편성 및 집행기준	<p>①: 인건비+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+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 합 50% 이내</p> <p>②: 국제화 경비+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 합 50% 이상</p>	<p>①: 인건비+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+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 합 50% 이내</p> <p>②: 국제화 경비+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 합 50% 이상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제29조(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)</p> <p>①~⑥ <생략></p> <p>⑦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에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장학금은 지침 제48조 제5항에 편성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편성액의 30% 이하로 집행 가능하다. 이 때, 지원 대상은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 4학년 1학기생으로 한정한다.</p>	<p>제29조(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)</p> <p>①~⑥ <생략></p> <p>⑦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에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장학금은 지침 제48조 제5항에 편성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편성액의 30% 이하로 집행 가능하다. 이 때, 지원 대상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 중 학사과정 최종학기생으로 한정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 분	현행	개정(안)
	<p>⑧ <신설></p> <p>⑨ <신설></p>	<p>⑧ <u>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은 교육연구단(팀)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대학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</u> 2. <u>대학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</u> 3. <u>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휴직을 한 사람</u> 4. <u>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</u> <p>⑨ <u>제8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단(팀)의 장이 해당 대학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, 예외사항 적용기간,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.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생을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.</u></p>